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6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태년 · 김영배 · 김준형

김태선 • 권칠승 • 한민수

박지원 · 송기헌 · 박용갑

정준호 · 염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인 금액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 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 게다가, 최근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 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 으로 낮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어 수급권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계급여의 적용특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	2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	
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	
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	
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	i
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u>100분의 30</u> 이상으로	<u>100분의 40</u>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8조의2(생계급여의 적용특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
	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u>제8조의2</u> (부양능력 등) (생 략)	제8조의3(부양능력 등) (현행 제8

조의2와 같음)